

1-1 공산품 및 전기용품 안전인증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제품안전협회를 통해 불법제품 조사업무 등을 위탁하면서 위 협회가 지방자치단체를 잘못 지정한 공문을 발송하는 등으로 안전인증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누락되고 있는데도 그 사유를 확인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 소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천시는 안전인증 위반사실을 통보받고도 해당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 누락

(가) 업무 개요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는 안전인증 표시 없이 제품을 유통한 189개 업체에 대해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2015. 3. 4.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고 2015. 3. 31.과 같은 해 4. 17. 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통해 189개 업체가 소재한 62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하도록 우편(등기)으로 요청하였다.

(나) 관계법령 등

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2016. 1. 27. 법률 제13859호¹⁾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공산품안전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9조, 제22조와 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2016. 1. 27. 법률 제13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1조,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이나 전기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거나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등으로

1)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

안전인증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와 제21조, 공산품안전법 제31조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19조의 규정을 근거로 협회는 시중에 유통되는 안전인증제품에 대해 불법·불량제품 조사를 한 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불법제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있다.

한편, “인증제도 운영실태” 감사기간(2014. 10. 6.~11. 4.) 중 2010년 이후 협회가 행정처분을 의뢰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절하게 행하여졌는지 확인한 결과, [표 7]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의뢰공문이 접수된 적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162개(17.3%) 업체에 달하는 등 총 189개(20.2%)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 현황(2010년 이후)

(단위: 개, %)

구분	총계	조치완료	미조치			
			소계	문서 미접수 ¹⁾	장기 미처리 ²⁾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업체 수 (비율)	938 (100)	749 (79.8)	189 (20.2)	162 (17.3)	16 (1.7)	11 (1.2)

주: 1. 문서 미접수: 지방자치단체에서 협회로부터 행정처분을 의뢰받은 문서의 접수내역이 없음

2. 장기 미처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서는 접수하였으나 인계인수 미비 등으로 현재 담당자는 관련내용 미인지

자료: “인증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서(2015. 3. 4. 시행)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불법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법제품 유통업체 간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협회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했다.

(㉡)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① 공산품 및 전기용품 안전인증 관련 사후관리 부적정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는 협회가 충분한 정보를 포함한 공문을 정당한 처분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는 등 행정처분 의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기간(2016. 11. 14.~12. 2.) 중 협회가 행정처분 조치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관리하고 있는 20개 지방자치단체(73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적정하게 조치하였는지 확인한 결과, 협회의 잘못된 업무 처리로 적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6개 업체)가 있었다.

우선, 고양시는 2015. 12. 3. 협회로부터 기존 공문(2015. 4. 17. 자, 5개 업체)에 따른 조치 결과를 회신하였으나 같은 공문을 받고 2015. 12. 24. 위 공문(2015. 4. 17. 자)이 접수되지 않아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협회에 회신하였는데도, 협회는 업체의 위반내용 등이 포함된 확인서 등을 첨부한 공문을 재발송²⁾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두면서 회신하지 않은 기관으로만 관리하고 있었다.

또한 협회는 주식회사 ♣♣♣가 2013. 9. 2.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경기도 오산시로 소재지를 이전하였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않은 채 2015. 4. 8.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행정의뢰 공문을 보내 위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³⁾

② 공산품 및 전기용품 안전인증 행정처분 업무에 관한 사항

2) 협회는 2015. 4. 17. 위반 내용 등이 포함된 업체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공문을 송부하였으나 같은 해 12. 3.에는 해당 업체명, 세부품목명, 의뢰일자만 간단히 기재하여 공문을 송부하였음. 한편, 고양시는 2015. 4. 17.자 공문을 받지 못하여 업체의 위반 사실 등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었으므로 그 사실을 협회에 회신하였으나 이후 협회에서 별도의 조치가 없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었다고 함

3) 2017. 2. 3. 기준 6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음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협회로부터 19개 업체에 대해 판매중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도록 의뢰하는 내용의 공문을 2015. 4. 8. 접수하여 이를 처리하였고, 포천시는 4개 업체에 대해 판매중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도록 의뢰하는 내용의 공문을 2015. 5. 18.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였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포천시는 통보받은 업체에 대해 지체 없이 적정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했다.

관계기관 의견 산업통상자원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산품 및 전기용품 안전인증 관련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앞으로 한국제품안전협회에서 불법제품 유통사실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한국제품안전협회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2 단체표준인증 심사 관련 규정 불합리

-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증을 발급받는 업체의 임직원을 단체표준인증 심사위원회에서 배제하도록 고시에 명시하지 않아 단체표준인증의 신뢰성 저해

(가) 업무 개요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는 「산업표준화법」 제27조의 규정 등에 따라 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⁴⁾으로 정하고, 위 법령에 근거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고시 제2016-229호, 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표준인증단체(이하 “인증단체”라 한다)에 대해 업무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인증단체(국가기술표준원 고시인 운영요령에 근거한 업무규정에서 정한 절차, 방식 등에 따라 단체규격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 단체표준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는 2015. 3. 4. 인증단체 33개 중 26개가 인증을 발급받는 업체의 임직원이 인증기관의 구성원이 되어 인증심사 및 발급 과정에 참여하는 등 단체표준인증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는 데 대해 인증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요구를 받아 이를 처리하였다.

(나) 관계법령 등

운영요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각 인증단체가 단체표준인증에 관한 업무 규정을 국제기준(ISO/IEC Guide 65)에 적합하게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4)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한편, 국제기준인 「ISO/IEC Guide 65」 4.2.6에 따르면 인증기관과 소속
구성원 등은 인증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인증대상(제품, 서비스, 프로세스)의 설계,
제조, 관리 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는 운영요령에 단체표준인증심사위원회
(이하 “인증심사위원회”라 한다) 구성에 있어 인증을 발급받는 업체(이하 “인증
업체”라 한다)의 구성원을 배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각 인증단체의 업무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증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㉔)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관서는 운영요령에서 인증심사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에 대해 명시적
으로 제한하지 않았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인증업체의 임직원이 인증심사
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어 인증을 발급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기간(2016. 11. 14.~12. 2.) 중 31개 인증단체의 업무
규정을 대상으로 인증심사위원회에 인증업체의 구성원을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
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업무규정상 인증심사위원회에 인증업체 참여를 제한
하도록 규정한 단체는 ■■■■ 등 3개⁵⁾ 단체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2015년 1월부터 2016년 11월 현재까지 31개 인증단체의 인증심사
위원회가 인증업체의 구성원을 포함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의 경우 위

5) ■■■■, ▲▲▲, <<<

기간에 인증심사를 통과한 6개 업체 중 4개 업체의 직원이 인증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본인의 회사 제품에 대해 스스로 인증심사를 하고 있었다.

또한 ☆☆☆의 경우 조합 전무이사 1인을 제외한 심사위원 6명 전원이 각각 다른 6개 인증업체에 소속되어 있었고, 이 중 4개 업체는 직원이 소속 업체의 인증심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위 기간에 인증업체 구성원으로 있으면서 인증심사를 통과하는 등 [별표 3] “인증심사위원회 내 인증업체 관계자 참여 현황”과 같이 10개 인증단체의 인증심사위원회에 23개 인증업체가 참여하고 있어 여전히 단체표준인증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기관 의견 산업통상자원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인증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인증심사위원회에 인증업체 관련자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운영요령을 개정하는 등 인증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단체표준인증심사위원회에 인증을 발급받는 업체 관계자의 참여를 배제하도록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을 개정하는 등 인증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1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제도 실효성 확보 미흡

- 창업자 부담금 면제제도에 대한 안내문구를 추가하도록 공장설립 승인신청서를 개정하고도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 개정양식 사용을 알리지 않아 실효성 저해

(가) 업무 개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창업자가 공장을 설립하면서 창업사업계획승인 제도를 알지 못해 개발부담금 등을 감면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2015. 5. 26.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

한편 2015. 5. 26. 시행한 “투자활성화 내역 추진실적” 감사결과를 보면 파주시 등 2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서 2012년 한 해 동안 개발부담금 등 부과대상 사업자 1,624개 중 593개(36.5%, 면제추정액 계 160억여 원)가 창업사업계획승인 제도를 알지 못해 개발부담금 등을 면제받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 2. 15. ‘창업자 여부 표시란,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공장설립 등의 승인 신청서의 규정을 개정·시행하였다.

(나) 관계법령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건축, 공장등록 등에 관해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을 개정하였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들이 해당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일선 행정 현장에서 개정되기 전 서식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법령 개선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개정사실을 공문으로 알리거나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정 양식으로 공장설립 승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에 해당 개정사실을 공문으로 알리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 규칙 개정 사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기간(2016. 11. 14.~12. 2.) 중 2016년도 공장설립 승인 건수가 많은 7개 지방자치단체⁶⁾에 대해 개정된 규정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본 결과, 7개 지방자치단체 중 6개⁷⁾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공문을 받지 못했거나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사유로 위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기존 양식을 그대로 활용하여 공장설립승인 신청 접수를 받고 있었다.

6) 2016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개별입지 공장신설 승인 건수를 기준으로 수도권 100건 이상, 나머지 시도별 20건 이상 승인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표본 추출(수도권: 화성시, 김포시, 경상북도: 성주군,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북도: 음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7) 표본으로 선정된 7개 지방자치단체 중 1개(김해시)만 개정 양식 사용

그 결과 2016. 2. 15.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위 시행규칙이 개정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여전히 기존 양식으로 공장설립 승인 업무를 하고 있어 공장설립 신청자가 창업자에 해당되어도 개발부담금 면제 등 창업자 지원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산업통상자원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개정된 서식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개정된 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개정된 서식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개정 전 양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신청인에게 창업자에 해당할 경우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추가 안내하여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치할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변경된 양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창업자가 개발부담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